

개인정보보호법 컴플라이언스 대응 솔루션

법률적근거 및 기능 비교

개인정보보호법		
제21조	개인정보의파기	보유기간경과, 목적달성 등 불필요시 파기 단서에 따라 보존시 분리 저장·관리 조치
제24조 제24조의 2	식별정보의 처리제한 (주민등록번호, 여권번호, 면허번호, 외국인등록번호, 운전정보)	개인식별정보 처리 금지 처리 시 분실·도난·유출·위조·변조 또는 훼손 방지위한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
제29조	안전조치의의무	개인정보가 분실·도난·유출·위조·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기술적·관리적·물리적조치
제34조의 2	과징금, 벌칙	주민등록번호의 분실·도난·유출·위조·변조 또는 훼손시 과징금 최고5억원 (안전성 확보 조치 의무를 다한 경우 예외)
제73조		안전성 확보조치 미 필요조치 미시행시 최고 징역2년, 벌금 2천만원
정보통신방법		
제23조의 2	주민등록번호의 사용제한	- 본인확인기관 - 법령에서 수집 이용 허용한 경우 - 영업상 목적으로 방통위가 고시한 경우 외 주민등록번호 수집·이용 할 수 없다
제28조	개인정보의 보호조치	개인정보를 취급할 때엔 개인정보의 분실·도난·누출·변조 또는 훼손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·관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
제64조의 3	과징금의 부과	개인정보의 분실·도난·유출·위조·변조·훼손 시 매출액의 3% 이하 혹은 4억원 이하의 과징금 부과
시행령 16조 (15.08.18 시행)	개인정보 유효기간	휴면계정 기간 경과시 즉시 파기, 분리보관 3년에서 1년으로 단축
보호조치기준제6조 (15.05.19 시행)	암호화 대상정보 및 기기확대	- 암호화 대상 장치 '모바일 기기' 추가 - 암호화 대상정보에 '여권번호·운전면허·외국인등록번호' 포함

개인정보보호센터 주요솔루션 라인업				
PC 개인정보보호 솔루션 PCFILTER	서버 개인정보 진단 솔루션 SERVERFILTER	개인정보 및 유해 웹게시물 필터링 솔루션 WEBFILTER	랜섬웨어 차단 및 중요 콘텐츠 보호 솔루션 RANSOMFILTER	공공기관 PC 유해물 종합차단 프로그램 XKEEPER PUBLIC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개인정보 검사 - 실시간 알람 - 파일 암호화 - 파일 안전삭제 - 개인정보 현황 보고서 - 정보유출방지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서버 내 개인정보 검사 - 이미지 파일 검사 - 파일 암호화 및 안전삭제 - 네트워크 트래픽 제어 - 통계 및 리포트 제공 - 예약검사 및 정책 설정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개인정보 게시 차단 - 불건전 게시물 차단 - 차단정책관리 - 첨부파일 업로드 차단 - 게시판 및 게시물 관리 - 무정지 장애 대응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랜섬웨어 행위 차단 - 실시간 콘텐츠 보호 - 차단율 높은 탐지 기법 - 효율적 에이전트 관리 - 통계 및 로그조회 - 편리한 사용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유해사이트 차단 - 유해동영상 차단 - 유해프로그램 차단 - 통합 관리 툴 제공 - 통계 보고서 제공

메일 문의 : privacy@jiran.com
전화 문의 : 1600-9185

법령	법령위계	항	세부내용	패널티	피씨필터	웹필터	서버필터	
정보통신망법	법률	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(15.03./15.03)	개인정보 내부관리계획의 수립·시행/ 접속기록 위변조 방지/ 개인정보 보안 저장·전송 위한 암호화 기술 등		○			
	고시	정보기술적, 관리적, 보호조치기준 (15.05./15.05)	제4조 개인정보 접근권한 제한, 개인정보의 불법유출, 다운로드, 파기금지/ 개인정보 취급자 컴퓨터 망 분리 의무/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컴퓨터, 모바일 기기 대상 정보유출 방지 조치	개인정보 분실, 도난, 유출, 변조, 훼손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과징금 부과	○	○	○	
			제5조 개인정보취급자 접속기록 확인, 보존, 관리/개인정보취급자 접속기록, 위변조 방지, 발도 저장, 정기 백업 실시		○	○	○	
		제6조 주민번호, 여권번호, 운전면허번호, 외국인등록번호, 신용카드번호, 바이오정보 암호화/개인정보 송수신 시 보안서버 구축/컴퓨터, 모바일 기기 등 저장시 암호화 생명주기요구사항) 수집된 개인정보의 저장 및 관리		○		○		
개인정보보호법	법률	개인정보보호법 (14.11./14.11)	제3조 개인정보보호 원칙/개인정보 안전한 관리		○	○	○	
			제24조 고유식별정보의 분실, 도난, 유출, 변조, 훼손 방지/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 조치 필수		○			
			제24조의 2 주민등록번호 처리 불가피한 경우 외 처리 제한		○	○	○	
		개인정보보호법 (13.08.06)	제2조(주민등록번호 처리 제한에 관한 경과조치) 개인정보처리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2년 이내 (2016년 8월6일까지) 보유하고 있는 주민등록번호 파기	주민등록번호 분실, 도난, 유출, 변조, 훼손 시 5억 원 이하의 과징금 부과	○			
	고시	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기준 (14.12./14.12)	제4조 개인정보 처리시스템 접근권한 최소화, 업무 담당별 차등 부여/ 개인정보취급자 변경시 접근권한 변경, 탈소	제4조(주민등록번호 처리 제한에 관한 경과조치) 개인정보처리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2년 이내 (2016년 8월6일까지) 보유하고 있는 주민등록번호 파기	주민등록번호 분실, 도난, 유출, 변조, 훼손 시 5억 원 이하의 과징금 부과	○		
			제6조 개인정보 통신망, 보조저장매체 통한 송수신시 암호화 / DMZ 영역 및 모바일기기에 개인정보 저장시 암호화	CEO징계 권고 ; 책임 있는 자에 해당 기관 대표자 및 책임 있는 임원이 포함	○			
			제7조 개인정보취급자 접속기록 6개월 이상 보관, 관리/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속기록 반기별 1회 이상 점검		○			
			제7조 개인정보 정보통신망, 보조저장매체 통한 송수신 시 암호화/DMZ 영역 개인정보 저장 시 암호화		○			
			제8조 개인정보 취급자 접속기록 최소 6개월 이상 보관, 관리/접속 기록 위변조, 도난, 분실 방지		○		○	
	고시	표준 개인정보보호 지침 (11.09./11.09)	제4절 제26조 개인정보 유출 정의 (개인정보 포함 파일 등 오전송, 권한이 없는 자의 개인정보 접근 등)		○	○	○	
정보공개법	법률	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(시행 2008.02.29)	제3조 공공기관이 보유, 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. (전문개정 2013.8.6)		○			
	공공기관 내부지침	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(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, 제공 제한)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정보유출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. 대국민 공개 문서에 주민번호, 휴대전화 등 개인정보 포함 여부 상시 모니터링 철저. 개인정보 모니터링 강화를 위하여 개인정보 필터링 SW 적용 추진	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 누설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징금 부과	○	○			
전자금융거래법	법률	전자금융거래법 (14.10./15.04)	제22조 금융회사 전자금융거래기록 최대 5년 보존 (추적, 검색, 오류 확인용) / 기간경과 및 상거래 관계 종료시 5년 이내 파기		○	○	○	
	고시	금융회사 정보처리 전산설비 위탁 관리 규정 (13.06/13.06)	제5조 정보처리 위탁 시 고유식별정보 암호화 등 보호 조치 의무/해외 이전 금지	컴퓨터의 위변조 및 불법 유출, 변조, 훼손 시 해당법인 또는 개인에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	○		○	
	가이드라인	증권회사 영업행위준칙 해설 (01.12./15.01)	제12장4~6조 주요 사실관계에 대한 기록 서면, 전산자료 등 형태도 3년 이상 기록, 유지		○		○	
산업기술보호법	법률	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(15.01./15.01)	제10조 국가 핵심기술 보유, 관리 기관에 대한 보호구역 설정, 출입허가, 휴대품 검사 등 기술유출 방지 위한 기반 구축		○			
			제14조 산업기술의 무단 취득 및 공개, 유출, 해외 유출 등의 행위 금지		○			
기타	법률	의료법 제22조 의료법시행규칙 제 15조	진료기록부, 조산기록부, 간호기록부, 환자명부, 처방전, 검사소견서 등은 동의없이 수집·이용·홍표이지 회원정보는 반드시 동의 필요		○	○	○	
		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 의료법 제22조	보유목적외에 달성되면 파기 (진료기록의 보존기간) 보유기간 : 처방전 2년, 환자명부, 검사소견서, 방사선사진 및 소견서, 조산기록부, 간호기록부 5년, 진료, 수술기록부 10년, 등진단서 등의 부분(진단서, 사망 진단서, 시체검안서 등을 따로 구분하여 보존할 것); 3년	주민등록번호 분실, 도난, 유출, 변조, 훼손 시 5억 원 이하의 과징금 부과	○	○	○	
		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7조 근로기준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20조 (근로계약서) 근로기준법 제48조 동법시행령 제27조 (임금대장)	근로계약서, 임금대장 등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은 정보주체 동의 없이 가능 / 주민등록번호 수집 등 동의없이 수집가능(보관), 근로자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관리적, 기술적, 물리적 보호 조치가 필요하며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사내 게시판, 홍보지를 통해 공개(파기) 법령에 따라 수집한 개인정보가 보관기간이 지난 경우지체 없이 파기	CEO징계 권고 ; 책임있는 자에 해당 기관 대표자 및 책임 있는 임원이 포함	○	○	○	
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	고시	신용정보법감독규정 (15.06.30/15.07.01)	제20조 별표 3 접근통제		○	○	○	
			제20조 별표 3 접속기록의 위변조 방지		○			
			제20조 별표 3 개인신용정보의 암호화		○			
			제20조 별표 3 출력 복사 시 보조호치		○			
			제20조 별표 3 개인신용정보의 조회권한 구분		○		○	